

인천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가단75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철

변론 종결2024. 10. 17.

판결 선고2024. 11. 14.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2019. 11. 2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C'를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에 사우나를 운영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공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1,340,86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되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금(유익비)으로 원고에게 1,340,866,000원을 상환하여야 하나 그 중 일부 청구로써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D	30,000,000원	경량, 큐피클, 천장SMC	갑 제1호증
2	E	515,000,000원	설비, 장비일체	갑 제2호증
3	F	85,000,000원	조적, 미장, AMC벽들	갑 제3호증
4	G	100,000,000원	전기	갑 제4호증
5	H	55,000,000원	DUCT	갑 제5호증
6	I	25,000,000원	소방시설공사	갑 제6호증
7	J	85,000,000원	목공	갑 제7호증
8	K	55,000,000원	자동제어. 아이스방, 온도계	갑 제8호증
9	L	113,000,000원	방수	갑 제9호증
10	M	64,000,000원	타일공사	갑 제10호증
11	N	21,000,000원	인테리어	갑 제11호증
12	N	15,000,000원	도배	갑 제12호증
13	O	80,000,000원	석재	갑 제13호증
14	P	46,526,000원	금속	갑 제14호증
15	(주)Q	33,340,000원	냉.난방기	갑 제15호증
16	(주)R	18,000,000원	도시가스	갑 제16호증
합계	1,340,866,000원			

2.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9153호로 원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상가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원고가 1,469,321,700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가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상가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다투었으나 위 법원이 2021. 9. 9. '원고 주장의 유익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시행한 공사가 이 사건 상가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 사건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인천) 2021나16414(본소) 사건}하면서 반소(위 법원 2022나14422 사건)로써 이 사건 상가에 투입한 공사비 1,474,952,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10%에 해당하는 147,495,260원의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2023. 11. 3. 1심 판단과 동일한 이유1)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기각 및 반소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의 상고(대법원 2023다309501(본소), 2023다309518(반소))에 대하여 2024. 3. 14. 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확정된 중국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동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참조). 또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미 피고가 제기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상가건물 인도 등 사건에서 유익비 항변을 함과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유익비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의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선행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정은영

별지

1) 항소심에서 원고의 유익비에 대한 감정신청이 채택되었으나 상가 관리업체가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감정인의 출입을 완강히 거부하여 감정인이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였고 이에 감정채택결정을 취소하고 감정신청을 기각하였다.